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대학용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01

CHAPTER

머리말

- 1. 이 책의 목적 06
- 2. 이 책의 구성 07

02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 1. 지침의 목적 (제1조) 10
- 2. 지침의 정의 (제2조) 11
-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16
-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8

03

CHAPTER

주체별 역할과 책임

-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2
-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24
-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29

04

CHAPTER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

-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32
-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3
-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41

05

CHAPTER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46
- 2. 검증주체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51
-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57
-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63

06

CHAPTER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80
- 2.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81
-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84

07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0

08

CHAPTER

참고문헌

95

부록

96





01

CHAPTER

머리말

1. 이 책의 목적
2. 이 책의 구성

1. 이 책의 목적

연구윤리 지침의 기여

STEP 01

2007년 처음으로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 훈령으로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지침')을 제정·공표한 이후 대학을 포함한 연구 현장에서 연구윤리 제도, 연구윤리 교육,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의 기준을 제공하여 건전한 연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왔음

교육부 지침은 글로벌 스탠다드 추종 단계를 넘어 세계 연구윤리 문화를 선도하고, 연구 현장의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지침은 교육부 훈령 제263호(2018.07.16.)임

길잡이의 필요성

STEP 02

-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함축적으로 규정된 교육부 지침을 대학 및 연구기관 현장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적용할 때 다양한 해석상의 오해와 그에 따른 연구진실성 업무 처리의 난점이 발생함. 이 때문에 각 연구기관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형편과 특수성에 적합한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시 공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자체 규정 등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연구윤리 현장의 실무자가 실제로 경험한 바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연구진실성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교육부 지침 관련 정보와 참고할 만한 여러 대학의 규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 길잡이를 구성하였음



2. 이 책의 구성

02 _ 편의상 2018년 개정 교육부 지침의 순서를 바탕으로 하나,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 절차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등으로 각 장을 재구성하였음



01 _ 그동안 교육부 지침의 제 규정을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절차 실무에 적용할 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공하여 대학 등이 연구윤리 규정을 제·개정할 때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교육부 지침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로 내용을 구성하였음

03 _ 각 장은 현행 교육부 지침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의, 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례’ 제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부 지침 규정의 융통성 있는 해석 제공, 일선 대학의 자체 규정 중 향후 타 대학의 자체 규정 개정에 모범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 규정사례, 그리고 교육부 지침 적용의 근거 법령 제시 등으로 구성되었음





02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1. 지침의 목적 (제1조)
2. 지침의 정의 (제2조)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 지침의 목적 (제1조)

교육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기본 목적)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지침)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 (궁극적인 목적)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더 나아가, 모든 연구자의 학문 연구 활동 전반(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발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연구 등)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
 -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진실성 확립은 모든 연구자의 전 학문 분야 연구수행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연구윤리 규정의 마련과 실질적인 적용은 연구자의 지위나 연구기관의 종류에 구분 없이 교육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연구 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함

참고 사항

- ▶ 대학의 규정이 반드시 교육부 지침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각 대학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바 혹은 목적을 명시
- ▶ 대학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여러 지침, 규정이 존재함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전문. (앞부분 생략) 본 연구윤리 지침은 서울대학교의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사회적 요청에 미래지향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초석으로 마련되었다.

「연세대」: “연구윤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학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양대」: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 (이하 '이 규정'이라 함)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교수윤리헌장, 교수윤리강령, 교수윤리규정에 표명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본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침의 정의 (제2조)

교육부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정의) 교육부 지침 제2조(정의)의 '연구자', '대학등', '전문기관'의 정의는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를 따름

- 대학 등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을 모두 포괄
- 전문기관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지원, 관리, 감독하는 기관

(1) 연구자의 범위

- '연구자'에 '대학원생'을 포함할 직접적인 근거는 불확실
- 교육부 지침 제2조 제1호 '연구자'는 「학술진흥법」 제2조 5호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대한민국학술원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과학자, 예술가 등
- 또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 그러나 대다수 대학원생이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등 '연구결과물'은 교육부 지침 제3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등에서의 '자체의 연구활동'에 포함되므로, 대학원생의 연구결과물도 교육부 지침 적용 대상이 됨
- 연구수행에 직접 참여하며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원생도 연구자에 포함시켜 연구윤리 인식을 강화하고 교육을 지원할 필요 있음

참고 사항

▶ 각 대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범위를 직접 정의하거나 혹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정의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본교의 박사학위논문 및 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사람
3.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연구부정행위등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연세대」: "연구윤리 지침"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 대상) 이 지침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KAIST」: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과학기술원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 연구원 및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내 교원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려대」: "연구윤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에 적용된다. ② (생략). 제3조 (준용) 본교 소속의 학부 및 대학원생, 그 밖에 본교에서 연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구결과물의 범위

- ◆ (예술가의 예술작품) 대학 및 연구기관 구성원(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생산한 저서, 예술작품(미술품, 음악, 사진, 영화 등)을 '연구자'의 '연구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 여부

예술작품에서의 부정행위

- (1) 표절의 예: 교수가 학생의 예술작품을 모방하여 전시, 공연하거나 판매함
 (2) 자기표절의 예: 대학 소속 구성원이 유사한 예술작품을 2개 이상 제작하여 전시, 공연하거나 판매함

- '연구자로서의 예술가' :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 '연구자'는 "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을 포함하므로 대학 소속 교원인 예술가는 연구자에 해당. 또한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역시 연구자에 해당
- '연구결과물'로서의 예술작품 : 교육부 지침 제3조의 제2항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과제" 및 제3항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해당하므로, 대학등 구성원이 자체의 연구 활동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 예술품을 제작, 공급하였다면 '연구결과물' 범위에 해당
- 교육부 지침 제2조 7호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이므로 대학등의 구성원의 저서 및 예술작품은 자체의 연구활동으로 생산한 '연구결과물'이며 '지식재산'에 속함
- 저서 및 예술 작품 표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리 가능하므로 대학 등의 구성원이 저서 및 예술 작품으로써 「저작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 대학 등이 해당 인물에 대해 제재 가능함

참고 사항

- ▶ 각 대학에 특수한 연구분야가 있는 경우 규정에 해당 분야의 '연구결과물'의 종류를 직접 정의 가능
- ▶ 국내 대학교에서 특수한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의 정의를 실제 규정한 사례는 없음

규정사례

「Cardiff School of Art & Design」: "Research Ethics: A CSAD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ocedures"(2014.05)에 예술작품과 관련된 연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Creative Work : the invention and generation of ideas, images and artefacts including design, as outlined in the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s Panel 2 subject cover (Visual Arts and Media: practice, history and theory): Art and design may include: painting; public art; sculpture; performance; installation; time-based art; printmaking; photography; screen productions; virtual reality; multimedia; digital and interactive art and design; software design for visual artefacts; animation; illustration; graphic and communication design; art and design in the landscape; environmental and interior design; theatre design; exhibition and events design; fashion; textiles; jewellery and metalwork; ceramics; glass; automotive design; product and furniture design; art and design management; cultural, theoretical and historical studies (where this is principally contextual to contemporary practice and culture within art and design). The Council will also support research in architecture that concerns building design (but not structural or civil or other aspects of engineering).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교육부 지침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직접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 ◆ (교육부 지침 직접 적용대상) 제1항의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 그리고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사업에는 교육부 지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 ◆ (자체 규정 적용대상) 제2항의 "대학등과 전문기관의 자체 연구 활동과 교육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 등의 자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지침을 '대학 등 및 전문기관 자체의 연구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적용할 수 있음

(1) 대학원생의 '연구결과물' 범위

- ◆ (대학원생의 졸업작품) 교육부 지침 제3조 제3항은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
 - 대학원생의 졸업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예술 작품 제작과 발표는 대학원 학위논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체의 연구활동'에 해당하므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음. 대학원생의 졸업작품 발표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 (학술단체에 교육부 지침 적용)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은 교육부 지침의 적용 대상. 「학술진흥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란 대학(제2호), 연구기관(제3호), 학술단체(제4호). 따라서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과 학술단체(학회) 등에서의 연구 활동”을 포함
- ◆ (외부 지원을 받는 연구활동에 교육부 지침 적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교육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참고 사항

- ▶ 연구비 지원여부나 연구비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구분
- ▶ 연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추가적인 연구윤리 기준 적용을 제시할 수 있음

규정사례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 또는 연구개발비·산학협력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수행하는 교직원, 연구원, 학생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3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예술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본교 소속의 연구자와 본교를 통하여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하 생략)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교육부 지침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 ◆ (연구 단계와 교육부 지침 적용) 교육부 지침은 연구개발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
- ◆ (교육부 지침 적용의 예외) 교육부 지침 적용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등 주로 이공계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경우가 대표적

참고 사항

- ▶ 대학교 자체의 규정이 타 법령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적용 여부에 대한 근거 마련
- ▶ 대부분의 대학교 규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자체 규정의 적용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대학은 법령과 자체 규정의 적용 범위 구분 필요

규정사례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순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한양대」: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① (생략). ② 특정한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연구분야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CHAPTER

주체별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교육부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기본 원칙)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와 자율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함

◆ (2018년 개정 교육부 지침)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추가하여, 교육부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강조함

◆ (연구윤리 교육 의무) 제10호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를 통해 모든 연구자가 연구윤리 규범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전하고 진실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천을 위한 지원

◆ (연구윤리 교육 책임) 대학 등은 교육부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0호 "지속적인 연구윤리 교육의 참여" 및 제6조(대학등의 책임) 제5항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에 따라 소속 연구자에게 연구윤리 규범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인식시켜야 함

- 대학등이 연구윤리(진실성) 담당부서의 연구윤리 교육 활동(커리큘럼 마련, 지속적인 교육 실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참고 사항

- ▶ 대학 자체 규정에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부분 보완 필요
- ▶ 경북대(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5조), 전남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세대(연구윤리지침 제5조 2항) 등은 교육부 지침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 ▶ 한양대(연구윤리규정 제2절 제4조~제10조), 과학기술원(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서울대(연구윤리 지침 제1장 제1조~제4조), 울산대(연구윤리규정 제2장~제3장) 등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자의 역할, 책임, 책무 등을 규정. 기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임
- ▶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규정사례

「서울과학기술대」: “연구윤리규정” 제5조 (대학의 역할과 책임) ⑤ 총장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대」: “연구윤리규정” 제34조 (연구자의 책무) ② 모든 연구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교육부 지침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대학의 중요성)** '대학등'은 교육부 지침 제2조(정의) 제2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를 모두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고 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대학이므로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은 연구윤리 확보에 핵심적임
- ◆ **(대학의 책임)**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 조성,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 연구수행 관련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판단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 운영,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연구윤리 실태조사 협조, 소속 연구자의 연구업적 관리, 연구부정행위 조사 실시 등
- ◆ **(2018년 개정 교육부 지침)** 교육부 지침 제6조 제7항 대학등이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에서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속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모니터링과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을 부과하고, 교육부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교육부 지침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등의 자체 규정에서 "대학등의 장으로부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과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연구진실성 담당 기구의 명칭과 구성의 불명확성

- ◆ (교육부 지침 규정) 교육부 지침 제6조 제3항, 제4항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 및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 (명칭 문제) 일선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 명칭 혼재. 특히 ‘연구윤리위원회’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자주 혼동됨. 반면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했음
- ◆ (구성 원칙 문제) 연구진실성 담당 기구의 구성 기준은 불명확한 반면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상”으로 명확함

참고 사항

- ▶ 연구진실성 담당 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학 자체 규정에 다음 사항의 반영 필요
 - 1) 기구의 명칭 : “연구진실성위원회”로 통일
 -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 3) 위원 : ① 연구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5인 이상,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음,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음 (선택) ② (중요)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이수료 임기 동안 전문성 유지 권장
 - 4) 필수 기능 :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 창구 설치·운영 (대학 내의 제보 창구 일원화)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 ③ 연구윤리교육
 - 5) 지위 확립 : ①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권장 ② 상설위원회 형태 권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6) 활동 안정성 확보 : 연구부정행위 검증 활동과 연구윤리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 7) 전문성 확보: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은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 임기 동안 전문성 확보 필요
(예시: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에 보임된 후 0개월 이내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은 해당 직에 보임된 후 0개월 이내에 연구진실성 조사·심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등의 형태로 규정 가능)

규정사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상설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본교에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5조 (소속등) ① 위원회는 연구처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 (연구윤리 교육 주체 명확화) 교육부 지침 제6조 제5항은 연구윤리 교육 실시를 “대학등의 책임”으로 규정. 대학 연구윤리 담당부서, 대학원 교육담당 부서, 산학협력단 등 상이한 부서에서 교육 수행 중 - 연구윤리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자체 규정에서 ‘연구진실성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규정사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연구윤리 교육 기능 명시

「고려대」: “연구윤리 규정” 제64조 (위원회의 업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명시

「순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연구윤리 정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명시하고 있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

“7. 교내 연구부정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표현하여 “연구 부정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 각종 조치”에서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2) 연구윤리 교육 지원의 필요성

- ◆ (규정의 필요성) 교육부 지침 제6조 제5항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연구윤리 전문강사, 장소와 시간 확보, 교육내용 결정, 교육자료 구매 등)에서 대학 지원이 필수적
- ◆ (교육 예산 확보) 실효성 있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대학등의 장은 연구진실성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체 규정 추가 필요

참고 사항

- ▶ 각 대학의 규정에 연구윤리 관련 사업(연구윤리교육, 연구진실성검증 등) 예산에 대한 내용 포함

규정사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예산 명시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6조 (경비) 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교육부 지침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 (자체 규정의 근거) 대학 등의 자체 규정 마련 근거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근거법령 : 「학술진흥법 시행령」 (2016.11.29 개정)

제17조(대학등의 조치)

-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 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참고 사항

- ▶ 각 대학교의 규정에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에 명시된 내용 포함
- ▶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사정을 반영





04

CHAPTER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교육부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보 접수창구)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와 검증은 제보자의 제보 행위로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학등과 전문기관은 의혹을 제보받아 담당부서로 전달할 창구를 마련해야 함. 교육부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보호) 제2항에 따라 이 창구는 익명 제보도 접수 가능

◆ (운영 주체 명시) 교육부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의 운영 주체 명시 필요

- 교육부 지침 제9조 3호의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는 대학 등과 전문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이므로 제보 접수창구를 '연구진실성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

참고 사항

-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심의를 담당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제보 접수 창구를 일원화

규정사례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64조 (위원회의 업무)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 ◆ (국내 연구부정행위 범위의 특징) 교육부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보다 폭넓게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포함

(1) 아이디어 표절의 구체적인 예시 마련

교육부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후략)

- ◆ (아이디어 표절) 교육부 지침 제12조에 연구부정행위(표절)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표절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규정사례 없음

- 1) 아이디어 표절은 논문, 보고서, 연구계획서 등의 심사, 학술 발표 참가, 학생의 과제물 평가 등에서 타 연구자의 정보를 취득하여(privileged information),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에 활용할 때 발생 가능
- 2)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표절은 타 법령에는 직접 규정 없음

- 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는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¹⁾”로 규정하여 아이디어 표절을 포함
 - “타인의 개념, 결론, 설명, 가설 등을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포함



▶ 아이디어 표절의 개념과 발생하는 경우를 명시

규정사례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28조 (아이디어 표절)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울산대」: “연구윤리규정” 제15조 (표절)

- ① (전략) 표절이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서 (후략)
- ② (전략) 학술적 토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적 대화 등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 등이 모두 포함된다.
- ④ 2. 타인이 발표하였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하는 행위. 이는 사용언어, 문장 및 표현(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됨
6.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 혹은 아이디어의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본인의 연구 등에 이용하는 행위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013).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pp.12-14.

(2) '부당한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 판단 통일

교육부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중략)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후략)

- ◆ (타 법령과의 상충) 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은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는 관련 조항 없음
- ◆ (판단) 교육부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당한 중복게재'가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 (국제적 인식) '부당한 중복게재'는 국제적으로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인식되므로, 타 법령에 명백한 규정이 없더라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함이 타당.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판정에 반영해야 함
- ◆ (규정 및 교육 보완) 국내에서 중복게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국내 연구윤리를 선진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중복게재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부당한 중복게재'의 조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당한 방법으로 이전 연구성과물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함

참고
사항

- ▶ 허용되는 중복게재와 부당한 중복게재의 개념을 명시

규정상례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31조(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 또는 발행인과 중복게재 예정 학술지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울산대」: “연구윤리규정” 제16조 (부당한 중복게재)

- ① 연구자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 또는 심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략)
- ② 연구자는 자신의 자료를 게재·출간 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중복게재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다. (후략)
- ③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후략)

(3) 연구부정행위 은폐, 증거인멸 및 지시, 강요 등의 규정 보완

교육부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중략)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규정의 필요성)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은폐, 증거 인멸, 타 연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지시 강요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

- 1) 연구부정행위 은폐 또는 증거인멸은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로 볼 수 있음(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 관련)
- 2) 타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지시’, ‘강요’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교육부 지침 제12조 제2항)를 적용 가능

참고 사항

- ▶ 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그 자체로 별도의 연구부정행위로서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발생가능한 제보자 및 조사위원에 대한 위해 또는 보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규정이 필요
- ▶ 서울대와 한양대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있어서 제보자와 조사위원 등에 대한 보복 행위 방지 조치 및 보복 행위가 행해졌을 때의 제재 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타 대학 등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규정사례

제보자 및 조사위원 보호 조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7조(교내 제보자 보호 등)

- ①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제보에 관여한 자에게 보복행위가 행해진 때에는 조사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 및 징계 그 밖에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한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9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조치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참고 사항

「자체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관련 규정 보완

- ▶ 통상적인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어도 각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 혹은 포괄적으로 명시 가능
- ▶ 포항공대와 울산대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강요 협박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경희대에서는 ‘부적절행위’로 규정
- ▶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행위(또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 제13조 제1항 제3호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하여 판단

규정사례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8.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포항공대」: “연구윤리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①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한양대」: “연구윤리규정” 제32조(예외)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연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과실
2. 정직한 실수
3.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울산대」: “연구윤리규정” 제14조(연구 부정행위의 종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 전반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자료의 중복사용)·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부정행위 강요·연구이탈 행위 등을 말한다.

제22조(연구이탈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1. 출판 부정행위: 중복출판, 분할출판 등
2. 데이터의 부적절한 처리·보관: 기록마비, 보관부실, 중요데이터 파기,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기록 오류, 데이터의 정당하지 않은 비공개
3. 연구 주제 상 부정행위: 생명연구 윤리위반,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기획 등
4. 연구관리 부정행위: 부당한 연구비 사용,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남용, 허위정보기재
5. 개인적 부정행위: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지도, 타인의 연구방해, 부정행위에 관여 및 방조 등

(4) 허위 제보에 의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업무수행 방해

- ◆ (허위 익명 제보)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제보 조사와 검증 판단)을 방해하므로, 이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로 간주 가능(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 관련).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고의적 또는 반복적 허위 제보에 적극 대응 필요

참고 사항

허위 제보에 대한 대응책 마련

- ▶ 명확한 허위 제보는 각 대학의 규정에 제보자 보호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어 적절히 대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 제보의 허위 여부는 조사·심의를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허위 의심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움
- ▶ 허위제보가 아니어도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실질적인 문제가 되므로 대응책 필요. 서울대, 연세대, 숙명여대 등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조(제보)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등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 ⑤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균관대, 전남대, 순천대, 동아대」: 공통으로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교육부 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목적) 교육부 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는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적용할 원칙을 제시
- ◆ (판단 기준) 교육부 지침 제12조만으로 판정할 경우, 학문 분야별 관행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연구윤리 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 현재 기준으로 과거 사안을 판단할 때의 불합리성,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와 '정직한 실수'(honest error)의 구별 등을 고려해야 함
- ◆ (유의점) 교육부 지침 제13조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당시의 연구윤리 규범들, 연구공동체의 보편적인 규범과 인식 등을 기준으로 윤리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함.

참고 사항

- ▶ 교육부 지침에서 검증시효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 되기 전에 수행된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경우 현재 규정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당시에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흔히 경우가 있음
- ▶ 그러나 연구윤리 위반 검증은 현재의 규정이 아닌 연구가 수행된 당시의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규정사례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05

CHAPTER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2. 검증주체와 검증기간
3. 검증기구
4. 검증절차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1-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교육부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해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익명 제보의 접수 허용 여부

- 1) (익명 제보 선별 가능성) 교육부 지침 제14조 제2항은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가 있는 익명 제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되 모든 익명 제보 처리를 규정하지는 않음.
 - 허위 익명 제보를 막기 위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제보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하므로(현행 교육부 지침상 “익명 제보 접수” 전체 거부는 어려움) 이를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 필요
- 2)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의 규정사례는 아래와 같음(연구진실성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제보 접수 창구 운영과 함께 참고 자료로서 공지 필요)
 - ① 표절 제보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표절대상 원문의 출처, 구체적인 표절 비교 부분 적시
 - ② 위변조 제보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위변조 부분 적시, 위변조 판단 근거(위변조 부분의 원본이 포함된 파일 또는 이미지) 제출

- ③ **부당한 저자표시 제보**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부당한 저자의 판단 근거(해당 연구결과물의 연구노트 및 연구참여 기록, 피조사자의 연구업적 목록, 해당 연구과제 수행 당시 피조사자의 소속 및 활동 내역 등)
- ④ **부당한 중복게재 제보**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이전 연구결과물의 출처, 구체적인 중복 부분 적시
- 3) 이미 기각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를 갖추지 않은 제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보가 반복 될 경우, 이전 기각 사유를 근거로 재차 기각 가능. 이를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 연구진실성 위원회가 정상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검증에 집중하도록 지원 필요

참고 사항

- ▶ 익명 제보의 가장 큰 문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관련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임
- ▶ 아울러 제보자에게 의견을 묻거나(조사위원 기피 등) 조사 진행사항을 알리는 절차(절차안내, 이의신청, 판정 등)를 진행하기 어려워 결국 제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 따라서 익명 제보의 경우 확실한 제보 요건의 확인과 제보자와 연락이 될 수 있는 연락처의 확보가 필수적임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조(제보)

- ③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등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반복 제보 또는 허위 제보에 대한 대응

- 1) 동일 사안을 반복 제보하거나, 허위 제보를 반복할 경우 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로 판단하여 대응 조치 가능
- ① ‘동일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반복 또는 허위 제보는 ‘이미 검증된 연구결과물’임을 근거로 기각 가능
- ② ‘동일한 제보자’에 의한 과도한 반복 또는 허위 제보는 ‘악성 민원에 의한 업무 방해’로서 적법한 대응 조치 가능

- 2) 교육부 지침 제14조 제7항(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에 따라 “허위 제보자는 지침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지 가능
- 3) 제보자는 기각된 제보 사안을 교육부 지침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항, 제28조(재조사) 제1항,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 직접 제보하여 권리 보호가 가능함을 고지 가능

참고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방법 및 허위 제보 관련 규정

교육부 지침 제14조 제2항(제보 방법), 제7항(허위 제보)에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는 제보의 방법과 절차, 허위 제보 예방 등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조(제보)

- ① 제보자는 제보의 대상인 피조사자와 논문 기타 연구성과물(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을 특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를 통하여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또는 간사가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제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등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논문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등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 ⑤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교육부 지침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 **(목적)** 피조사자에 대한 성급한 공개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판정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해야 함
- ◆ **(방법)** 대학 등은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절차 및 일정을 성실히 알려줌으로써 피조사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예외)** 교육부 지침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제3항”은 ‘법령 위반’,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 ‘공권력에 의한 조치 필요’ 등 상황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보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하여 이에 필요한 고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제시

참고 사항

- ▶ 연구부정은 그 의혹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연구부정행위 의혹으로 제보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검증이 완료되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기 전에 연구부정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아야 함
- ▶ 검증 결과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규정사례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67조 제67조(제보자, 피조사자 보호)

- ②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부정행위 조사과정 중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검증주체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2-1 검증주체 (제16조)

교육부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함)을 두어야 한다.

- ◆ (검증 책임)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해당 연구과제와 그 연구자를 관리 감독했던 연구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음
- ◆ (주체 명시 목적)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연구진실성 확립은 대학등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자체 검증 활동을 통해 대학등의 검증 전문성 및 연구진실성 확보 역량을 증진하고자 함

(1) 검증주체 판단 기준

- 1) 공동 연구과제 연구부정행위 사안의 검증 책임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장 바람직함
- 2) 해당 연구결과물의 연구책임자, 제1저자, 교신저자 등의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에 우선 검증 책임
- 3) '연구부정행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에 우선 검증 책임
- 4)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란 연구결과물의 저자 프로필에 명시된 기관임. 논문 발표 학회보다 연구 수행 당시 저자가 속한 기관에 우선 검증 책임이 있음
(예: 「한국공학회」 발간 논문에 “홍길동(한국대학교 교수)”로 저자가 표시되었을 경우, ‘한국대학교’가 ‘한국공학회’보다 우선 검증 책임이 있음)
- 5) 연구자의 전 소속기관과 현 소속기관 사이에는 논문 투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가 실제로 수행된 기관, 연구결과물의 사사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
- 6) 교육부 지침 제18조 제4항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야 한다”에 따라, (전) 소속기관이 조사하였을 경우, (현) 소속기관과 학술지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참고 사항

- ▶ 각 대학의 규정에서는 각 대학이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본교의 박사학위논문 및 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사람
3.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연구부정행위등이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2-2 검증주체의 예외 (제27조)

교육부 지침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대학등의 장은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 (자체 조사가 곤란한 경우) 1) 대학 등 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자체 검증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2) 대학 등 기관의 규모가 작아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교육부 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체척·기피·회피 등에 연관),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관련된 공동 연구과제에서 검증 책임을 서로 기피하거나 연구부정행위 판단에 기관 간 의견이 크게 다를 경우 등 - 교육부 지침 제27조 제3호와 같이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검증 책임을 서로 기피하거나 연구부정행위 판단에 대해 의견이 크게 다를 경우,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관련 부분에서 '(1) 검증주체 판단 기준' 참조

참고
사항

-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검증을 요청할 수는 있음
- ▶ 그러나 검증의 목표가 사실확인을 통하여 부정행위로 판정할만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고, 연구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각 대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자체 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공동연구 등 부정행위 검증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본교에서 검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등과 같이 규정 가능)

2-3 검증 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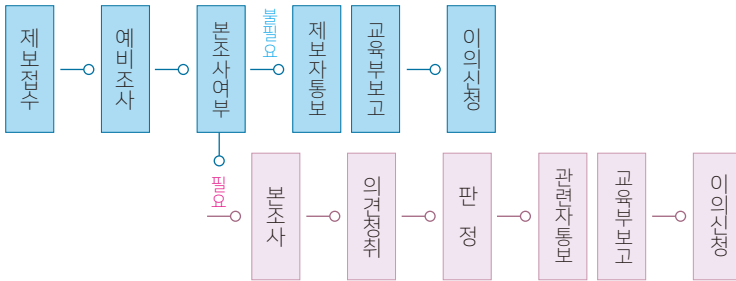
(1)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²⁾

단계	개시	종료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전체 기간 제24조	제24조,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			
예비조사 제19조	제19조,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착수	제19조, 종료 후 10일 이내 제보자에게 통보 제29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본조사 제20조	예비조사 종료 후, 즉시 착수	제24조, 판정종료 후 즉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 통보 제29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재조사 제28조	제28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이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청			

- 1) 예비조사 개시 :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해야 함(제19조)
- 2) 전체 검증기간 : 예비조사 개시 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교육부 지침 제24조).
연구기관은 이 기간 안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3) 판정 후 후속 처리 기간 :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 4) 교육부 재조사 요청기간 :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 재조사 요청 가능함

2)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96.

(2) 연구부정행위 검증 단계별 절차³⁾



- 1) 예비조사 결과(본조사 실시 필요 또는 불필요 여부 결정)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예비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
- 2) 본조사 판정 후 '결과 통보'에 대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
- 3) 이의신청 처리 후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교육부 장관에 재조사 요청 가능

참고 사항

-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일치하나 검증의 각 단계에 따라 규정된 기한은 학교마다 차이가 남
- ▶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대학교의 제도와 교육부 지침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검증이 자체되는 경우 기관의 검증 의지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체 검증에 소요되는 기한은 가능한 교육부 지침인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검증이 늦어질 경우 대책 등을 각 대학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사례

「고려대」: “연구윤리규정” 제6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기간)

- ①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조사 2. 본조사 3. 판정
- ④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판정 결과는 예비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 결과나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96.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3-1 조사위원회 구성 (제21조)

교육부 지침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조사위원회 형태) 예비조사기구(예비조사위원회)의 형태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교육부 지침 제19조 제1항). 본조사위원회는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포함,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비율 30% 이상 및 최소 1인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참고 사항

- ▶ 본조사위원회와 달리 예비조사위원회는 각 기관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특별히 구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사례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예비조사)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하여 (이하 생략)

「고려사이버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은 조교수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등)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전문가인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그 위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학생 또는 연구원인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7조 (예비조사 및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되, 3인 중 1인 이상은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활용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의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분야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⁴⁾

2)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선 상정하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적은 특정 분야는 예외 인정 필요. 조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장이 인정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 가능

- 본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50% 이상, 외부인의 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규정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⁵⁾

전체 인원 수	5	7	9	11	13	15
전문가 인원 수	3	4	5	6	7	8
외부인 인원 수	2	3	3	4	4	5

4)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97.

5)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97.

참고 사항

- ▶ 특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연구분야의 “소분류 → 중분류 → 대분류”로 확대시키면서 위원을 확보할 노력이 필요함
- ▶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해당 학회에 전문가를 요청하는 것이나, 추천된 전문가가 조사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요함

규정사례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교외 인사 3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4조 (본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중 1명을 본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제4조 (조사절차 등)

- ③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 나. 조사 위원 중 외부인은 30% 이상으로 한다.
 - 다. 조사 위원 중 해당전문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해당전문분야라 함은 원칙적으로 학술진흥재단⁶⁾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적당한 소분류가 없는 경우, 중분류나 대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 현 '한국연구재단'을 의미함.

3-2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

교육부 지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 ◆ **(목적)** 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일 수 있는 인물은 제외해야 함
- ◆ **(규정상례)** 조사위원 후보자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즉,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관계 변화까지 폭넓게 고려), 학문적으로 사제 관계인 경우,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던 경우 등에 해당
- ◆ **(제보자를 위한 사전 공개)**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관의 장은 본조사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 특정 조사위원 기피 기회를 주어야 함(통상 피조사자에게는 조사위원 위해, 보복 등 우려로 명단을 알리지 않음)
- ◆ **(조사위원 기피)** 본조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제22조 제1항)로 조사위원 기피를 신청하면 이를 수용해야 함
- ◆ **(제한)**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에 부합하는 판정을 이끌기 위하여 조사위원에 압력을 가할 경우, 이는 ‘조사방해에 의한 연구부정행위(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공지
- ◆ **(권고)** 검증절차 시 “제보자 및 조사위원의 인권 보호”를 참조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조사위원에 대한 위해 방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p.38 규정사례참조)
- ◆ **(이해상충 예방과 자진 회피)** 조사위원 후보자는 제22조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익이 되는 경우와 손해가 되는 경우 모두 해당) 연구자로서 양심에 따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함

참고 사항

- ▶ 조사위원은 제보자나 피조사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보자에 대하여는 본조사 전에 기피 등의 기회를 주고 있는 대학이 많으나 피조사자에게 기피 등의 기회를 주는 곳은 적음
- ▶ 조사 중 이루어지는 면담 등에서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위원을 실제로 대면한 후 조사위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합당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위원의 교체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상례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④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사위원 선정 기준

- 1) 조사위원은 교육부 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 조사 참여를 양심적으로 회피해야 함
- 2)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정 시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1항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항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를 적극 적용해야 함
- 3)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위원 기피 대상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우호적인 인사 및 적대적인 인사를 모두 포함
- 4) 조사위원은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이 없음을 밝히는 문서를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제출 또는 타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밝힌 후 조사에 참여해야 함
- 5) 제보자의 조사위원 기피는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2항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만 수용.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보자의 조사위원 과다 기피 신청

- ◆ (사례) 제보자의 조사위원 기피 신청 권리(교육부 지침 제22조 제2항)를 악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과다 또는 반복적으로 조사위원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 1)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2항은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 제보자의 과다하거나 반복적인 조사위원 기피 신청은 교육부 지침 제22조 제1항 등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 제보자의 조사위원 기피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 가능. 다만 교육부 제22조 제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판단 근거를 기록해야 함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4-1 검증원칙 (제17조)

교육부 지침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연구부정행위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의 1차 주체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 당시 연구자 소속기관 조사위원회(교육부 지침 제16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에 있으므로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
- ◆ (입증 책임 전환)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 요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 근거)

※ 「민사소송법」에서 입증책임 전환⁷⁾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의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50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의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므로 상대방에 비해 증거능력의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원리를 적용한다(증거우위의 원칙).

※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원칙⁸⁾

상이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빙성이 큰 증거가 우위에 있다는 원칙. 이를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적용하면, 제보자가 제출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신빙성이 더 큰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서 관련 자료의 파기, 훼손, 은폐 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방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에 있어서 제보자의 제보가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 1)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교육부 지침 제17조 제3항은 대학등 장의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등의 연구부정행위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반드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필요
- 2)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교육부 지침 제17조 제3항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과 관련, 조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임시 기구이므로, 상설 상위 기관인 ‘연구진실성위원회’ 수준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규정함이 바람직함
- 3) (예산 확보) 독립성의 실질적 보장과 연구진실성 확립 역할 촉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대학 자체 규정에 ‘독립성 보장’과 더불어 ‘예산 확보’ 포함이 바람직함

7)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95.

8) 한국연구재단(2014),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p.37.

규정사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명시

“연구윤리규준 및 관련위원회 규정” 제65조(위원 및 지위) 제5항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예산 확보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8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0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2조(경비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6조(경비) “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2 검증절차 (제18조)

교육부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기본 절차)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예비조사 :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 결정(교육부 지침 제19조)

본조사 :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입증(교육부 지침 제20조)

판정 : 조사결과 확정,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교육부 지침 제24조)

◆ (세부 절차) “제보 → 예비조사 → (제보자 요청시 이의신청 처리) → 본조사 → 판정 → (제보자 및 피조사자 요청시 이의신청 처리) → 교육부 재조사”의 7단계로 구성됨

◆ (의결 기준) 원칙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은 대학의 자율성 영역에 속하므로 획일적 규정보다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의결 기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장함

- 1) (현황) 교육부 지침 제18조 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판정’ 시, 일선 대학의 구체적 의결 기준은 대학 등에 위임함. 현재 대학별 의결 기준은 조사위원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 ‘만장일치’ 등으로 다양함.
- 2) (유의점) 만약 5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구성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5인 중 3인만이 판정에 출석, 3인 중 2인만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상황 발생 가능. 이때 판정의 정당성 논란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많은 조사위원 출석과 높은 비율의 찬성으로 판정 의결 기준을 설정함이 바람직함

3) (참고) 국내 '학회'는 '조사위원회 활동 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연구부정행위 판정 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연구부정행위 징계 의결 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신속 조치)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신속성을 위해 기관의 장과 조사위원회는 다음 2가지의 '신속 조치'(fast track) 가능.

1) (예비조사 생략)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시, 곧바로 본조사 착수(교육부 지침 제18조 제2항)

2) (즉시 판정)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본조사 없이 연구부정행위 판정(교육부 지침 제19조 제2항)

◆ (기관 간 협력) 연구부정행위 1차적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수행 당시 피조사자 소속 기관(교육부 지침 제16조 제1항). 피조사자의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과 현재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 교육부 지침 제18조 제3항은 현재 소속기관에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할 의무를 규정

◆ (관련 기관 통보) 교육부 지침 제18조 제4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피조사자 소속기관 통보는 적절한 후속 조치(제재 및 기관 내 공지 등)를 통해 피조사자와 다른 연구자에게 연구진실성 인식 고취 및 연구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함.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 통보는 논문 철회로써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연구결과물이 계속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참고 사항

- ▶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의결 기준에서,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그 후속조치(제재 건의) 의결 등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다른 사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음을 참고

규정상례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1조(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7조의 제3호(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와 제6호(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아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9조(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1조(위원회 회의) ④ 회의는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발의, 연구부정행위 심의결과의 판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혹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4-3 예비조사 (제19조)

교육부 지침 제19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 (목적)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본조사 필요성 결정 절차(교육부 지침 제19조 제1항).
- ◆ (결정) 1)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 없이 곧바로 판정 가능(교육부 지침 제19조 제2항). 2) 제보가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 등 본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예비조사 단계에서 종료(교육부 지침 제19조 제4항).
- ◆ (제보의 구체성) 교육부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가리킴.
 - 교육부 지침 제19조 제3항의 “지침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 조치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
 -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처리하는 기구이며 생명윤리 사안, 동물실험 사안, 연구비 관리, 실험실 안전 등에 대한 제보는 적합한 부서 및 기구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참고 사항

- ▶ (제보자 이의신청) 제보자는 예비조사위원회가 본조사 미실시를 결정한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교육부 지침 제25조(이의신청) 제1항). 해당 기관은 교육부 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제보에 대한 예비조사 재실시)해야 함
- ▶ (피조사자 이의신청) 피조사자가 예비조사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에 대하여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① 별도의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나 ② 본조사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본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대학은 없음

규정사례

제00조 : 예비조사 결과가 본조사 실시로 결정되고 이에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예비조사위원회 구성과 역할의 명확한 기준 부재

- 1) 교육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는 1인 담당부터 본조사위원회와 대등한 규모까지 다양함.
 - 본조사 위원회를 최소 5인 이상으로 규정함(교육부 지침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제1항)에 비추어, 예비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 구성이 적절
- 2)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예비조사위원회에 포함 가능
- 3) 예비조사는 제보의 구체성, 동일 제보의 반복성 등을 판단하여 본조사 필요성을 결정. 제보의 구체성,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 가능.
 - 예비조사위원회는 허위로 판단된 제보를 본조사 없이 기각할 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해야 함(교육부 지침 제19조 제4항 ‘예비조사 종료’)

참고 사항

- ▶ 이 책자 “V.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3. 검증기구, 3-1. 조사위원회 구성” 참조.

4-4 본조사 (제20조)

교육부 지침 제20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정의)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사실 여부 입증 단계로 “조사 → 변론 → 결정”을 거침

- 조사단계: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과의 면담 및 자료 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
- 변론 단계: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청구 단계
- 결정 단계: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 (구성) 예비조사위원회 형태는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교육부 지침 제19조 제1항), 본조사위원회 판정은 피조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조사위원회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구성해야 함

◆ (변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여 판정 후 이의신청(교육부 지침 제25조)과 재조사(지침 제28조)를 최소화하고 잘못된 판정에 따른 제보자, 피조사자, 소속기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정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함(지침 제20조 제2항).

교육부 지침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 (자료 요구) 교육부 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 (입증 책임) 연구부정행위 사실의 1차적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으나, 만약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로 전환 (교육부 지침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제1항)
- ◆ (제재 건의)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사실로 판정하면 교육부 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의 ‘건의’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조치는 다른 전담기구에서 최종 결정

(1) 연구부정행위자 징계 수위 관련 정보 요구

- ◆ 최종 판정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관련 보편적 규범이나 정보는 없음.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는 연구진실성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영역임.
- ◆ 지역별 또는 학문 분야별 교류를 통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간 정보공유 등으로 적절한 제재 조치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 필요

참고 사항

-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수위는 원칙적으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기능은 아니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양정을 위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음
- ▶ 구체적인 징계 수위보다는 부정행위의 심각성 및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위원회의 판정 등)

-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요청한다.
 1. 징계
 2. 교원 재계약임용의 제한
 3.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지
 4. 연구비 지급 중단 또는 연구비 신청의 제한
 5. 피조사자에 대한 당해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지
 6.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7. 본교 연구처 학술활동지원비의 지급 중단
 8. 연구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고의에 의한 허위 제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4-5 판정 (제24조, 제25조)

교육부 지침 제24조(판정)

-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정의) 판정은 조사위원회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교육부 지침 제20조(본조사) 제2항)과 이의신청(교육부 지침 제25조) 처리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
- ◆ (원칙) 조사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문서로써 통보
- ◆ (기간) 본조사 최종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부터 6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해야 함

(1) 연구부정행위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

- 1)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이유는 검증을 가급적 신속하게 종료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각자의 연구수행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교육부 지침은 해당 사안의 규모가 크거나 관련자가 다양한 사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못할 시,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충적으로 규정
- 3) 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분명히 통보하여 관련자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해야 함

교육부 지침 제25조(이의신청 등)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 **(목적)** 판정 후 대학 등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최종 보고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이의신청 기회 부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교육부 지침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제1항). 이는 판정의 오류, 증거 누락, 편향성 등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확인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화 하기 위한 조치임
- ◆ **(이의신청 횟수)** 교육부 지침 상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각각 이의 신청 가능하지만, 그 절차가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각 단계에서 각자 1회만 이의신청을 인정해야 함
- ◆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결과(본조사 실시 필요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예비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이의신청과 재조사 구분)** 교육부 지침 제25조(이의신청)과 지침 제28조(재조사)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검증결과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 신청대상이 다름.
 - 이의신청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재조사(교육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에 한함)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연구비 지원기관)에게 요청해야 함
- ◆ **(판정 후 대응 순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대해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1차로 대학 등에 '이의신청'을 하고 2차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요청. 따라서 1차로 이의신청 후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해야 함

참고 사항

- ▶ 이의신청의 접수 혹은 기각 등에 대한 원칙은 각 대학에서 규정할 필요 있음

규정사례

이의신청의 접수 원칙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제5조(판정, 재조사, 이의신청)

- ① “판정”은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은 본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에서 본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신뢰성 등으로 판정결과가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는 본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③ 예비조사결과나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이미 검토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의 접수, 기각을 결정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증 실시 절차

「KAIST」: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조사결과의 확정)

- ④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을 할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재심이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반복적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청의 대응

- 1) 이미 검증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이의신청” 반복 시, 예비조사위원회는 새로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 가능(교육부 지침 제19조 제4항 근거)
- 2) 대학 등의 이의신청 처리에 불만이 있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교육부장관에 재조사 요청 가능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조사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기관에 재조사 위탁 가능.

참고 사항

- ▶ 동일 사안의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재조사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사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1조(이의신청)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06

CHAPTER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2. 조사결과의 보고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교육부 지침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목적)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종료 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

◆ (유의점) 대학간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참고 사항

-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 ▶ 유사한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른 대학 및 해당 대학에서의 조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동일 대학 내에서는 일정한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교육부 지침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 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후략)

- ◆ (보고 시기)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후, 그 결과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해야 함(교육부 지침 제29조 제1항).
- 예비조사는 종료 후 30일 이내가 보고 기한, 본조사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판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까지 종료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30일 이내가 보고 기한에 해당.

(1)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9조는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는 데 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을 규정
-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교육부 지원과제에 적용됨(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과학기술부 및 타 중앙행정기관 지원과제에 적용됨
- 3) 교육부는 대학 등이 조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최종 결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제출'로 규정됨

규정사례

판정 후 상위기관 보고

「경복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7조 (조사결과의 제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제3조 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단

교육부 지침 제29조(조사결과외의 제출)

(중략)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조사위원에게 위해 또는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교육부 지침 제12조 제1항 6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및 제2항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임에 대한 사전 공지 필요
- 2) 교육부 지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항의 조사위원회 명단 사전 공개는 제보자의 특정 조사위원 기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만 공개, 피조사자에게는 사전 공개 의무 없음

- 3) 교육부 지침 제29조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역시 피조사자에게는 공개 의무 없음
- 4) 교육부 지침 제31조 제2항은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조사위원 명단 공개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
- 5) 교육부 지침 제31조 제3항은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는 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 가능
- 6)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부 지침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을 균형적으로 적용 가능. 다만 법원의 명령, 판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해야 함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교육부 지침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기록 대상)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다음을 모두 포함⁹⁾

- 1) 예비조사·본조사·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 2)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증인과의 면담 내용
- 3) 제보자·피조사자·참고인·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 4) 전화·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
- 5) 제보자·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내용
- 6) 전문가 검토·자문의견
- 7) 예비조사·본조사 결과보고서

◆ (기록 보존) 조사 기록의 보존 이유¹⁰⁾

- 1) 조사의 투명성·책임성·신뢰성 제고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시 재조사 과정에서 활용
- 3)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책 수립 시 활용
- 4)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의 공유를 통한 향후 연구부정행위에 체계적 대응
- 5) 연구부정행위의 현황 파악과 검증 과정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유형 정립 및 효율적인 검증 방법 도출

9)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117.

10)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117.

◆ (조사위원 명단 공개)

- 1) 본조사 착수 전에는 제보자에게만 공개(교육부 지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항)
- 2) 본조사 판정 종료 후에는 조사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공개(지침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2항)

- ◆ (유의점)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 공개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 장치이나,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 참여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따라 공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 교육부 지침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에 따른 “(2) 조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단”을 참조하여 결정함

(1)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조사기록 보관 기한

- 1)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폐지, 오래 전의 연구부정행위 의혹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
- 2) 교육부 지침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1항은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이상 보관”으로 규정. “반드시 5년 이상”이란 “5년에 못 미치는 기간 이내에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 3) 대학등이 “최소 5년의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기록을 폐기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규정에 맞게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저장, 제출, 관리, 폐기했는가의 검토 필요
- 4)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연구결과물(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저서 등)은 조사기록의 최소 보관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연구공동체에 유통되므로, 이를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참고 사항

판정 후 상위기관 보고

- ▶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조사기록은 후에 검증 자체, 조사위원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함
- ▶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종료된 경우, 해당 자료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만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규정사례

「연세대」 :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07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교육부 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 ◆ (기본 원칙)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이미 2011년 개정 시 '시효' 규정을 폐지. 교육부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음
- ◆ (대학 자체 규정)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대학의 자율로 정하되,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소급 적용 제한) 현재의 규정을 과거의 연구에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소급 적용은 제한해야 함.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에서의 연구윤리 규범들이나 연구공동체의 관례를 적용
- ◆ (적용 기준일)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기의 예는 1)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날, 2) 학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한 날, 3)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 등으로 판단 가능
- ◆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점의 연장) 과거의 연구부정행위라도, 그 결과가 포함된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물을 재활용(논문 게재, 학술회의 발표 등)했다면, 가장 최근의 재활용 당시의 연구윤리 지침 적용

규정사례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 (검증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검증시효 기간 폐지에 따라 이 규정 제정일(2006.12.19)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는 과거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경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4조(검증시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제1항에 명시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서는 검증시효에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사업 이외의 검증시효는 연구윤리 검증 요청이나 제보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진실성 검증 시효)

- ①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제1항에 명시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서는 검증시효에 제한이 없다. 이들 사업 이외의 검증시효는 진실성 검증 요청이나 제보가 있는 날부터 만5년으로 정한다.
- ② 학위논문은 경우 본교의 박사학위논문은 검증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석사학위논문은 위원회가 설치된 2007년 이후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08

CHAPTER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함창곡 외(2013).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한국연구재단(2014),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한국연구재단(2019), 「2018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2019),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Machacek, V. & Srholec. M. (2017). "Predatory Journals in Scopus". IDEA, March 2017,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nd Graduate Education of the Economics Institute of the Czech Academy of Sciences.

00대학교 연구윤리 규정(규정사례)

- 아래에 제시하는 대학 자체 규정 규정사례는 전국 주요 대학의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반영하여 도출한 것입니다.
- 각 대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식과 내용의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정일 : 0000.00.00

개정일 : 0000.00.00

담당부서 : 000 00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00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저서·예술작품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 ① 이 지침은 본교의 자체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본교의 자체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식 재산 및 예술작품 제작, 학술적 저작물 출판 등과 같이 본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 ② 본교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③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 등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마.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정당한 저자자격 부여와 그 관리는 다음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다.
- 가.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라.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마. 연구의 계획,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논문 초고를 작성한 사람은 정당한 저자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 바.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 사.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 아.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5.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중복게재 여부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나,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문 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나. 논문 등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함
-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함
- 마.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해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조사위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를 하는 행위
- 다. 타인에게 제4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시 및 강요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7. (기타)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 연구자와 대학의 책임과 의무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지침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 (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 ① 학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적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 ②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 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대학의 책임)

-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상충

제9조 (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0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장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총장은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속 등)

- ① 위원회는 ○○○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 ② ○○○과 ○○○캠퍼스에 사전조사를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본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연구처장, 연구윤리센터장 등 보직교수 중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함)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연직 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직 구성, 인력 충원,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7조 2호와 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진실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20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2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2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4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에서 구성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각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5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제26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에서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28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

제32조 (판정)

- ① '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 후 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 판정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이의신청 등)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제34조 (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징계
 2.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3.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4.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④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구지원 기관의 장에게 조사 종료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가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의 경우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조사 종료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3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에 조사 종료 이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규정(전면개정/일부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집필진

- 조진호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 현영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권정윤 CRE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

기 획 :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042-869-6355

편집인

발행/인쇄일자 : 2020년 5월 21일

편집/제작 : 로즈앤북스 02-313-6571~2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용 시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의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매품

이 책의 원문파일(PDF)은 한국연구재단 및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홈페이지(<http://kucre.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의 저작권은 「한국연구재단」이 가지고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를 금하고 있습니다.